##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9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 박홍배·정진욱·민병덕

이광희 • 염태영 • 김재원

김정호 • 문진석 • 조승래

서미화 • 전용기 • 박정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됨.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인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

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제조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 제품에대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33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정법률
<u>&lt;신 설&gt;</u>	제33조의3(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주
	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u>따라 제조한 제품·용기의 경</u>
	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u>그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u>
	<u>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재
	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제33조의3(</u> 재생원료 사용 제품・	<u>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u> ·
용기의 구매촉진)(생 략)	용기의 구매촉진) (현행 제33조 의3과 같음)
	-10-1 E p /